2014·2015 국가소비자중심
2년연속 브랜드대상 수상
http://incheon.iusell.co.kr

인천 검단 우방 아이유쉘 입주자 모집공고

usell
우방 아이유쉘

- 이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5.06.19)임(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은「주택법」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수도권정비계획법」제 6조 제1항에 의한 성장관리권역임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15.06.19)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19세 이상인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도 청약 가능함 다만 청약 신청자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인천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함
- 투기 적발자 처벌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됨
- 본 아파트는「주택법」제 38조의2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임.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람
- 2순위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으로 청약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청약하고자 하는 거래은행에 청약금을 미리 예치해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의거하여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함(단, 특별공급의 입주자 선정업무는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동·호수배정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함)
- 고령자와 장애인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6항」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6.19) 현재 청약신청자나 청약신청자의 세대에 속한 자 중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을 주택배정을 희망한 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람.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음(최하층이라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 군인으로서 주택법 제75조 제2항의 입주자 저축에 2년(24회)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수도권 거주자로 봄.
- 전매금지 및 재당첨 제한기간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주택법」제41조의2 및「주택법시행령」제45조의2 제3항 규정에 의거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 (2015.07.07.) 부터 6개월 동안 전매가 금지되며,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기존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의 청약이 가능함.(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 통장은 계약여부에 상관없이 재사용 불가함).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과 –28980호(2015.06.19)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728-6번지 외 29필지
- 대지면적 : 30,718.30㎡ (공동주택 : 30,312.4643㎡, 근린생활시설 : 405.8357㎡)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1층, 지상 15층, 8개동 총 55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171세대 포함(기관추천 특별공급 53세대, 다자녀 특별공급 50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53세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15세대)]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구분	아파트코드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타입	공급 세대수	주택형별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공급세대수					
					세대별 계약 면적			기타공용 면적	계		특별공급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분양 세대수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기관추천 (일반)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민영주택	2015000278-01	59.8184	59	117	59.8184	20.1641	79.9825	29.9402	109.9227	41.1078	11	10	11	3	35	82
	2015000278-02	84.9684	84A	219	84.9684	29.9517	114.9201	42.5283	157.4484	58.3911	21	20	21	6	68	151
	2015000278-03	84.3431	84B	164	84.3431	30.8717	115.2148	42.2153	157.4301	57.9614	16	16	16	4	52	112
	2015000278-04	84.9166	84C	55	84.9166	30.8995	115.8161	42.5024	158.3184	58.3555	5	4	5	2	16	39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타입)	층별 구분	공급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입주지정일)
			대지비	건축비	합계	1차	2차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계약시	2015.08.07.	2015.10.30.	2016.01.29.	2016.04.29	2016.07.29.	2016.11.30.	2017.03.31.	
59	기준층	94	103,982,000	147,618,000	251,600,000	10,000,000	15,160,000	25,160,000	25,160,000	25,160,000	25,160,000	25,160,000	25,160,000	75,480,000
	3층	8	103,982,000	142,718,000	246,700,000	10,000,000	14,670,000	24,670,000	24,670,000	24,670,000	24,670,000	24,670,000	24,670,000	74,010,000
	2층	8	103,982,000	136,418,000	240,400,000	10,000,000	14,040,000	24,040,000	24,040,000	24,040,000	24,040,000	24,040,000	24,040,000	72,120,000
	1층	7	103,982,000	127,618,000	231,600,000	10,000,000	13,160,000	23,160,000	23,160,000	23,160,000	23,160,000	23,160,000	23,160,000	69,480,000
84A	기준층	176	147,699,000	202,201,000	349,900,000	10,000,000	24,990,000	34,990,000	34,990,000	34,990,000	34,990,000	34,990,000	34,990,000	104,970,000
	3층	15	147,699,000	191,701,000	339,400,000	10,000,000	23,940,000	33,940,000	33,940,000	33,940,000	33,940,000	33,940,000	33,940,000	101,820,000
	2층	15	147,699,000	184,701,000	332,400,000	10,000,000	23,240,000	33,240,000	33,240,000	33,240,000	33,240,000	33,240,000	33,240,000	99,720,000
	1층	13	147,699,000	174,201,000	321,900,000	10,000,000	22,190,000	32,190,000	32,190,000	32,190,000	32,190,000	32,190,000	32,190,000	96,570,000
84B	기준층	132	146,614,000	203,286,000	349,900,000	10,000,000	24,990,000	34,990,000	34,990,000	34,990,000	34,990,000	34,990,000	34,990,000	104,970,000
	3층	11	146,614,000	192,786,000	339,400,000	10,000,000	23,940,000	33,940,000	33,940,000	33,940,000	33,940,000	33,940,000	33,940,000	101,820,000
	2층	11	146,614,000	185,786,000	332,400,000	10,000,000	23,240,000	33,240,000	33,240,000	33,240,000	33,240,000	33,240,000	33,240,000	99,720,000
	1층	10	146,614,000	175,286,000	321,900,000	10,000,000	22,190,000	32,190,000	32,190,000	32,190,000	32,190,000	32,190,000	32,190,000	96,570,000
84C	기준층	45	147,610,000	201,390,000	349,000,000	10,000,000	24,900,000	34,900,000	34,900,000	34,900,000	34,900,000	34,900,000	34,900,000	104,700,000
	3층	4	147,610,000	190,890,000	338,500,000	10,000,000	23,850,000	33,850,000	33,850,000	33,850,000	33,850,000	33,850,000	33,850,000	101,550,000
	2층	4	147,610,000	183,890,000	331,500,000	10,000,000	23,150,000	33,150,000	33,150,000	33,150,000	33,150,000	33,150,000	33,150,000	99,450,000
	1층	2	147,610,000	173,490,000	321,100,000	10,000,000	22,110,000	32,110,000	32,110,000	32,110,000	32,110,000	32,110,000	32,110,000	96,330,000

중도금 전액 무이자

※ 기준층 : 4층부터 각 동의 최상층까지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선납할인액은 상기 중도금 일정에 따라 계산됨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연 3%의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함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할인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공통사항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충액 범위내에서 주택형별, 동별, 층별로 차등을 두어 당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통합취득세가 미포함된 가격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옵션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옵션품목은 분양계약자 선택사항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등)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 가능함.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지 있지 않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음(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이 없음)
- 층수는 건립동,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임(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포함하여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분양가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종합토지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납부시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한)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음.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음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중도금 금융대출이 필요한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대한주택보증(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사업주체가 정해에 대한주택보증(주) 또는 대한주택보증(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상 건축물을 포함함을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신청접수방법
1. 특별공급 : 해당 청약신청 기간에 당사 견본주택에서 청약신청 하여야 함
2. 공통
(1) 층별·동별·호별·향별 구분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 구분하여 접수하되,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하여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2)「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6항」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당첨자 또는 그 세대가 속한 당첨자 중 주택공급신청 (특별 및 일반)시 최하층 주택배정을 희망한 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함.
3. 1순위
- 1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접수 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함
- 청약자는 입주자 선정방법(가점제/추첨제) 선택이 불가하며, 청약 통장 순위와 청약 신청시 입력한 주택소유현황 등에 따라 자동 분류 접수됨.
※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대상 주택수의 40%를 가점제로 적용 우선 공급하고, 60%를 추첨제로 신청자에게 공급함.(2013.05.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4. 2 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 함
5. 청약자격 기재방법
- 거주개시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등 · 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 유의사항
○ 청약 신청시 유의사항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청약통장 가입은행의"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함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감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될 것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 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함
※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시어 향후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람

Ⅳ. 당첨자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발표	동호수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기관추천(국가유공자등)/ 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	□일시 : (2015.06.24.) 17:00 □장소 : 당사 견본주택 게재	□일시 : (2015.07.02.) □금융결제원 및 청약 홈페이지 (www.apt2you.com)	□일시 : 2015.07.07.~2015.07.09. (3일간, 10:00~16:00) □장소 : 당사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http://incheon.iusell.co.kr)
일반공급	1순위	□일시 : (2015.07.02.) □장소 : 당사 견본주택 게재		
	2순위			

※ 특별공급 동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수행함에 따라 당사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호수 추첨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음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10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함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 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견본주택)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구분		국민은행(국민은행에서 청약접수한 자에 한함)	금융결제원(국민은행외의 은행에서 청약접수한 자에 한함)
인터넷	이용방법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전체서비스→ 주택청약→ 당첨확인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당첨사실조회
	이용기간	· 2015.07.02.~2015.07.11. (10일간)	
전화 (ARS)	이용방법	먼저 이용 전화번호를 누르신 후 안내말에 따라 청약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등을 연속하여 누름	
	전화번호	국민은행 콜센터 ☎1599-9999 (서비스코드 : 9→1→3)	금융결제원 전자금융 공동망 ☎1369 (서비스코드 : 5#)
	이용기간	· 2015.07.02.~2015.07.11. (10일간)	
휴대폰 모바일	대상	국민은행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청약신청시 SMS 당첨통지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 중 당첨자
	제공일시	· (2015.07.02.) 08:30부터 ※제공시간은 각 은행 및 금융결제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별 통보 예정임.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음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상호 정산하기로 함(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및 사이버모델하우스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달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모형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착공 및 설계변경 시 또는 실제 시공 시 배치, 구획 면적, 모양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공급안내문 및 카달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마감재 보드, 인쇄물을 참고 하시기 바람(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마이너스옵션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니,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자,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달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옥탑부 디자인, 주동/창호형태, 벽체마감, 디테일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 본 건축물은 개정된 주택법에 의거 감리대상에서 제외 되었던 공종(조경공사, 도배공사, 도장공사 등)이 감리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입주 개시전 특정일자를 계약자에게 통보하여 사전방문토록 할 예정임
- 하자판정은 사용검사(사용승인도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하자등에 따른 피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 59조에 따라 적용됨
- 계약이후 입주자(계약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견본주택 건립시 미관 및 성능향상 등을 위하여 건축하가도서와 일부 변경되어 시공된 사항은 추후 견본주택기준으로 건축허가변경(또는 경미한 설계변경신고) 처리할 예정임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함
- 경비실(주차관제시스템)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음
- 각동 1층 필로티 또는 단지내에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 사용할 수 있음.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될 수도 있음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달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대한주택보증(주)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관련 법령에 의함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한 입주금은 제외한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한 경우는 제외한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대한주택보증으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PF보증 사업장 분양보증 취급 사항
① 본 사업장은 대한주택보증 제공하는 PF보증관리 사업장입니다.
② 당사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로서의 권리를 대한주택보증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한다."
③ 분양수입금 및 임대수입금은 계약금을 포함하여 분양관리계좌에 입금하셔야 하며, 타 통장입금시 분양수입금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④ 공급계약체결시 공급계약서[임대주택 사업장의 경우에 "확정분양가 방식"공급계약 체결을 위한 별도의 합의(계약)서 등 포함]에 "분양자(매도인 또는 임대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 또는 임차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 또는 임대수입금(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분양전환금 등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할 일체의 금원을 포함한다)채권을 대한주택보증(주)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한다"또한 확정일자를 받아 사본 1부를 대한주택보증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상세내용은 보증회사인 대한주택보증(주)로 문의 바람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	시공회사
상 호	하이플러스카드(주)	(주)우방건설산업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311(야탑동, 코리아디자인센터)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504(산본동, 산본역사 3층)
등록번호	131111-0191187	200111-0026017

▣ 입주예정일 : 2017년 8월(예정)
▣ 견본주택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075-2
▣ 홈페이지 주소 : http://incheon.iusell.co.kr
▣ 분양문의 : ☎032-542-7000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http://incheon.iusell.co.kr

59㎡ / 84㎡ 총 555세대

분양문의 032)542-7000

hi-pass
시행 SM그룹 하이플러스카드 시공 SM(주)우방건설산업